

# 차량외 피해물 손해사정 업무 위탁 계약서

106-88-3022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애니카손사"라 한다)와 (이하 "외부손사"라 한다)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차량 외 기타피해물(이하 '기타피해물'이라 한다)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다 음 -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애니카손사"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로부터 위탁 받은 기타피해물 손해사정 업무를 "외부손사"에게 위탁하며, "애니카손사"와 "외부손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상호간의 권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 제 2 조 【관련법규 준수 및 청렴계약조항】

"외부손사"는 "애니카손사"로부터 기타피해물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로서 위탁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본 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한다.

1. "애니카손사"와 "외부손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하며,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비롯하여 이행 과정에서 습득한 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존재함을 인지한다.
2. "애니카손사"와 "외부손사"는 상호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3. "외부손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를 받은 경우 "애니카손사"의 감사파트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애니카손사"는 통보 내용과 통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지킨다.
4. "애니카손사"와 "외부손사"의 일방 직원이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유·무형의 손해를 불문하며, "외부손사"가 삼성화재에 손해를 입힌 경우도 포함)에는 "애니카손사"와 "외부손사"는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애니카손사"와 "외부손사"는 상호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요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 3 조 【위탁 업무】

1. "애니카손사"가 "외부손사"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3종 대물 보험금 손해사정
  - ② 기타 "애니카손사"가 요구하는 손해사정 관련 업무
2. 위탁하는 손해사정 대상 기타피해물은 다음과 같다.
  - ① 건축물, 시설물(신호등,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 ② 전기·통신설비
  - ③ 이륜차
  - ④ 건설기계, 농기계, 특수차, 튜닝차량
  - ⑤ 기타(수목, 악기류, 기계장비류, 가축, 농산물 등)
3.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손해발생의 사실 확인 및 원인 조사
  - ②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③ 손해액 조사 및 확인
  - ④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⑤ 상기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 제 4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은 2015. 2. 27日 ~ 2015. 6. 30日로 한다.

### 제 5 조 【외부손사의 의무】

1. "외부손사"는 "애니카손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 업무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를 포함한 보험금 손해사정서를 "애니카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외부손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위임받은 손해사정 업무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외부손사"의 부담으로 한다.
3. "외부손사"는 "애니카손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 위임받은 손해사정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및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 6 조 【수수료】

1. 삼성화재는 "외부손사"가 "애니카손사"에게 수임 받은 업무를 완료하고 최종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도로 정한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별첨#1), 여비교통비 지급 기준

(별첨#2)에 의거 수수료를 14일 이내 지급한다(최종손해사정보고서라 함은 '손해사정 금액'이 최종 확정된 보고서를 말한다). 삼성화재는 최종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다음 날로부터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에금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를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삼성화재", "에니카손사", 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해자 간의 보험금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최종손해사정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완 요청사항은 서면으로 통지 후 PRM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미지등재 한다.

2. "삼성화재"는 손해사정 진행 중 소송 제기로 중도 종결되거나 또는 손해사정보고서 제출 후 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경우에도 최종손해사정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까지 "외부손사"에게 손해사정 수수료를 지급한다.
3. 위탁 손해사정 대상 건이 다수의 피해물인 경우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 및 여비교통비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다수의 피해물에 대한 소유자가 1인인 경우, 1건의 위탁 건으로 정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② 다수의 피해물에 대한 소유자가 다를 때, 각 청구금액이 700만원 이상일 경우 별도의 위탁 건으로 정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③ 기타 업무범위, 업무량, 업무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할 수 있다.

## 제 7 조 【기밀의 유지】

1.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판매방법, 노하우 등,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고, "영업비밀 등"이란 영업비밀을 포함하여 회사가 법령 기타 사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 첩보, 자료 등을 의미한다.
2. "외부손사"는 사전에 "에니카손사"의 명시적인 서면동의 없이는 기존의 또는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영업비밀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와 같다.
3. "외부손사"는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본 계약의 기밀의 유지 조항에 의거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4. "외부손사"는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 "기타 제반 관계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며, "에니카손사"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한다.

## 제 8 조 【개인정보 보호】

1. "외부손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삼성화재' 및 '애니카손사'의 고객의 개인정보 (이하 "고객정보"라 한다)를 본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 또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고객정보를 사용 (제3자에게 양도, 위탁, 누설 등 포함)할 수 없다. 단, 본 계약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삼성화재' 및 '애니카손사'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외부손사"는 고객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고, 고객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고객정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외부손사"의 고객정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에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보호정책(화면 인쇄 및 복사기능 차단, 이동식 저장장치 사용금지,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외부손사"는 자신의 임직원(피용인, 사용인 등 호칭을 불문하고 "외부손사"의 관리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대리인 및 위탁받은 자가 고객정보보호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상기 임직원 등에 대한 일체의 관리 책임을 부담한다.
5. "외부손사"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고객정보 유출, 침해 등의 고객정보와 관련한 일체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애니카손사"에게 통지하고 "애니카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애니카손사"는 "외부손사"의 고객정보보호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부손사"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외부손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애니카손사"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7. "외부손사"는 "애니카손사"나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관련 서류(전산파일 포함)에 대해 수수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파기하고 매월 1회 파기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8. "외부손사"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거나 본 계약에 따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일체의 고객정보를 즉시 반환 또는 폐기 및 "외부손사"의 모든 시스템에서 삭제 하여야 한다.
9. 본 조에 따른 의무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유효하다.

## 제 9 조 【손해배상 이행】

1.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삼성화재와 "삼성화재애니카손사" 또는 "외부손사"에게 손해(유·무형의 손해를 불문하며, "외부손사"가 삼성화재에 손해를 입힌 경우도 포함)가 발생한 경우 그에 상당한 손해를 상호간의 귀책사유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2. "외부손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애니카손사"에 대해 손해(유·무형의 손해를 불문하며, "외부손사"가 삼성화재에 손해를 입힌 경우도 포함)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외부손사"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 10 조 【계약의 변경 및 개별계약】

1. "애니카손사"와 "외부손사"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계약에 따른 개별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단 본 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을 우선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 11 조 【위탁업무 평가】

1. "애니카손사"는 본 계약 체결시 또는 사전에 공지한 위탁 업무 성과 평가항목에 따라 매분기 별로 "외부손사"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대해 "외부손사"에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2. "외부손사"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애니카손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애니카손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또는 재평가 결과를 "외부손사"에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통지한다.

## 제 12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애니카손사" 또는 "외부손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 서면 통보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① 상대방이 불법, 부정, 담합 행위를 하였을 때
  - ② 상대방이 그 사업을 중지하거나 양도하였을 때

- ③ "애니카손사" 또는 "외부손사"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영업의 중요자산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④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2. "애니카손사"는 다음의 경우 서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본 계약 제11조 [위탁업무 평가]에 따른 "외부손사"의 계약기간 내 평가등급(매 분기별 평가결과의 누계 평균)이 "F등급"일 때
  - ② "외부손사"의 계약기간 평가등급이 "D등급"일 경우 "애니카손사"의 별도 심사를 거쳐 조건부 계약을 유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애니카손사"와 "외부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① 상대방이 본 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②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이익을 현격히 침해하였을 때 (유·무형의 이익 침해를 불문)
  - ③ 상대방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휴·폐업 및 양도양수, 임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애니카손사"(또는 삼성화재) 또는 관련 임직원과 "외부손사" 또는 관련 임직원 간 업무상 분쟁, 분규, 시위(1인 시위 포함)의 발생, 소송제기 및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이 미흡하였을 때
4.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및 손해 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13 조 【분쟁처리】

- 1.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 해석에 있어 상호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
- 2. 본 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재판적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 첨 #1.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

별 첨 #2. 여비, 교통비 지급기준

"애니카손사"와 "외부손사"는 위 계약내용을 상호 성실히 이행하고,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작성일자 2015년 2월 27일

"애니카손사"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42번지 부림빌딩 8층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종수 (인)

"외부손사" :

106-86-30227  
대표이사 최계희 (인)  
외부손사정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지동 10-40번지  
서미스 손화사

별첨 #1.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

선임 손해사정 보수 기준표

종 목	손해사정 금액	요율(%)	기준액(원)
이륜차	서울, 경기	미적용	250,000
	지방	미적용	300,000
3종	1천만원 미만	기본료	660,000
	1천만원 ~ 2천만원	5.06	1,012,000
	2천만원 ~ 3천만원	4.18	1,254,000
	3천만원 ~ 5천만원	3.74	1,870,000
	5천만원 ~ 1억원	2.88	2,882,000
	1억원 ~ 2억원	2.20	4,400,000
	2억원 ~ 3억원	1.95	5,841,000
	3억원 ~ 5억원	1.61	8,030,000
	5억원 ~ 10억원	1.27	12,650,000
	10억원 ~ 20억원	1.11	22,220,000
	20억원 ~ 30억원	1.02	30,690,000
	30억원 ~ 50억원	0.91	45,650,000
	50억원 ~ 100억원	0.4 가산	
	100억원 초과금액	0.2 가산	
	배상책임 약관담보	1.5배	해당사건 결정 손해액 보수기준
	사고조사 면책결정 사건	3배	
	법정 분쟁사건	일반소송건의 손해사정	기본보수 30% 할증
의뢰사의 경영환경에 영향이 있는 사건 손해사정		당사자 협정 수수료	

- 주) 1.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기본표)보다 적을 때에는 차하위 기준액 적용함  
 2. 외부손사 면책 결정 기여시 아래 각 항에 따른다.  
 - 보상담당자는 외부손사의 면책 기여도를 외부손사와 협의 결정 후 면책 수수료 산정시 반영한다.  
 - 위장사고 면책 수수료는 보험조사파트 지급기준액 또는 세부심사기준액 이하로 한다.  
 - 여비, 교통비 별도 산정  
 3. VAT 포함 금액임



## 선임 손해사정사 여비, 교통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항공임	실비
철도임	KTX(특실 제외)
선임	1등 정액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 기타교통수단	실비
업무용 승용차	유류대 및 통행료
일비(식비포함)	30,000원
숙박비(1일당)	50,000원

주) 1. 대한민국내 선임손해사정인 법인의 본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시단위 기준) 여비교통비는 일비만을 지급한다. 단, 보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타지역소재 조사자가 시외 출장한 경우에는 상기 여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 같은 지역 중복 출장 시 교통비 1회 지급 제한

2. 일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일비, 숙박비는 1일당 금액임).
3.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실비를 정할 수 있다.
4. VAT 포함 금액임